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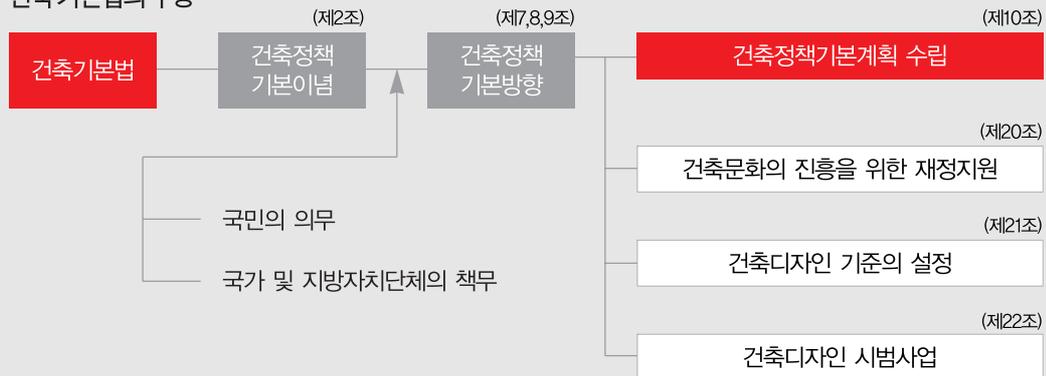
AURI BRIEF

창간호 2009. 4. 13

건축과 도시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출발점: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

-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, 그에 따른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2008년 8월에 발효됨
-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된 「건축기본법」은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,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,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,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,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건축관련 최상위 법령으로서의 위상을 지님

건축기본법의 구성



- 「건축정책기본계획」은 건축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,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, 지역 건축의 발전 및 지원대책, 건축문화 기반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현재 연구용역 진행중
- 「건축정책기본계획」은 5년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1기 계획은 2009~201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, 국가계획 수립 후 이를 반영한 지역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임

1. 건축기본법의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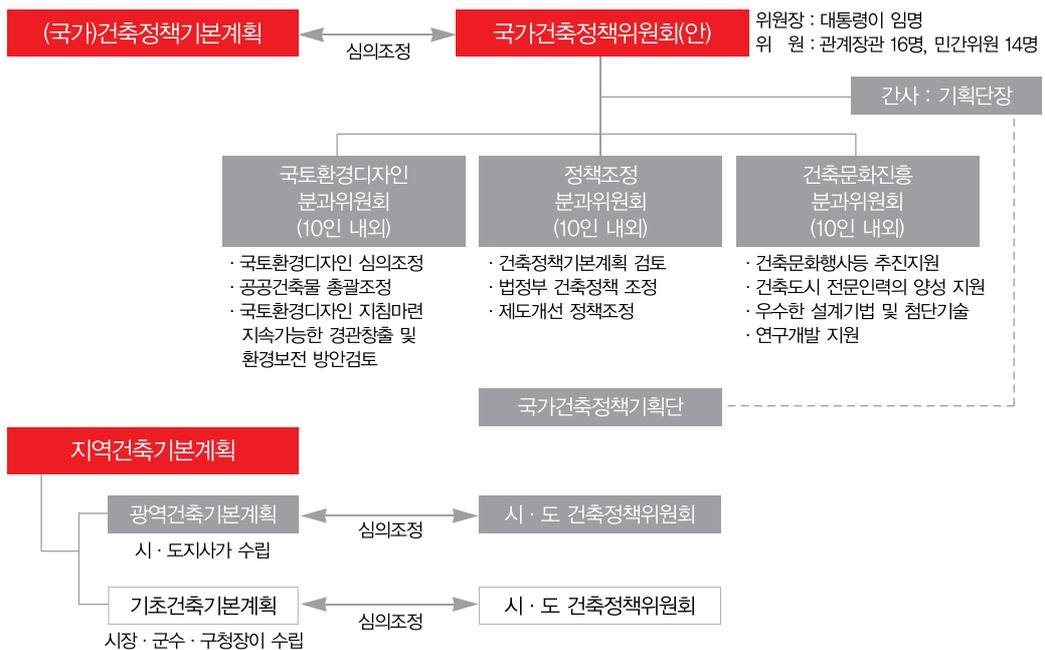
법 제정의 의의

- 건축과 건축디자인을 새롭게 정의하고, 건축의 기본이념과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하였으며, 건축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, 국민의 책무를 명시
- 건축의 기본이념 : 국민의 안전·건강 및 복지를 위한 생활공간의 조성, 사회요구의 조정 및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,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의 조성
-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: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과 사회적 공공성 확보, 문화적 공공성의 실현

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정책기본계획

-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두며,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·조정과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사업 지원, 건축행정 개선, 건축문화행사 추진 등을 담당
-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조정을 담당하며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조정 담당
-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제1기 위원회는 관계장관 16인과 민간위원 14인으로 구성되었음

건축정책기본계획과 건축정책위원회의 관계



건축문화의 진흥

-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문화 관련시설의 설립 및 운영, 출판·전시·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,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, 건축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,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,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
-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설정하는 특정 목표와 그 수행과정을 담은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
 - 건축디자인 기준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 확립과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,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각각 설정
 -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
 -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,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·정비사업, 민간발주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
 - 국가,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제안 입찰, 개선제안 입찰, 설계공모 등 다양한 입찰방식을 강구하도록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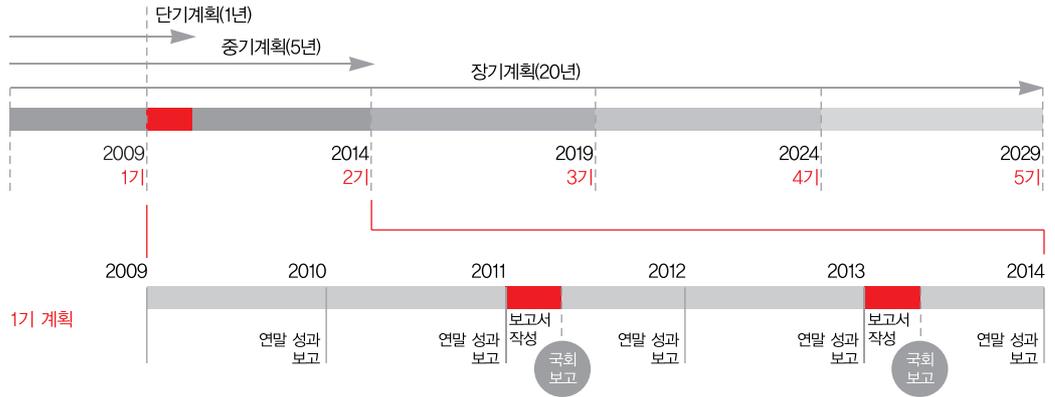
2.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

계획의 범위

- 계획수립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는 건축기본법의 건축에 관한 정의에 근거하여 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구조, 공공공간 및 경관을 포함하는 공간환경까지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
- 계획 내용은 건축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

건축기본법 제1조	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, 전망 ·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·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·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·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·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·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·지원 및 관리방안 ·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· 건축문화 기반구축 · 건축관련 기술의 개발·보급 및 선도시범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·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·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·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· 건축문화 진흥관련 주민지원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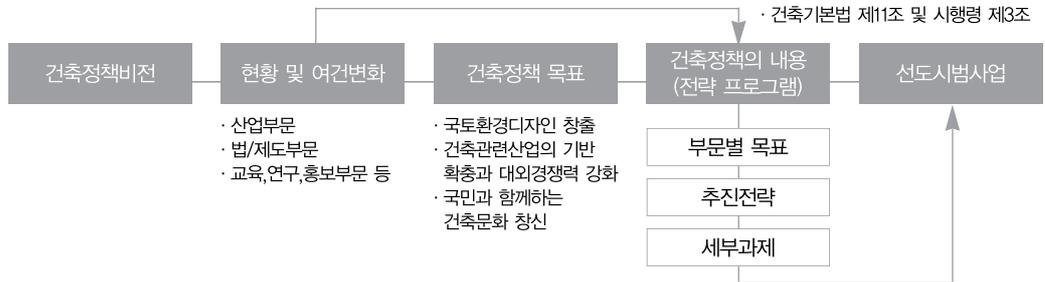
-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5년 단위의 중기 법정계획으로 건축정책의 추진전략별 장·단기적 계획을 제시하며, 1기 계획기간은 2009~2014년으로 설정



계획의 구성체계(안)

-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정책기본계획으로 건축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선도시범사업을 통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제안

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제안



3. 향후 진행사항

-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이 추진중이며, 올해 4월중으로 부처협의, 5월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친 후 전반기에 확정될 예정
-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이 시작되어야 하며, (지역)건축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립지침(안)이 국토해양부에서 작성되어 배포될 예정

김상호 |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shkim@auri.re.kr 031-478-9602



건축도시공간연구소

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창간호

발행처 |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| 운영태

주 소 |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, 710호

전 화 | 031-478-9600

팩 스 | 031-478-9609

홈페이지 | www.auri.re.kr

수록된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 이번 호는 홈페이지(www.auri.re.kr)에서 볼 수 있습니다.